

#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951호 2025년 7월 17일(목)

## 경 상 북 도

### ■ 규 칙

-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096호) ..... 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고 시

- 지방하천 대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8호) ..... 7
- 지방하천 소서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9호) ..... 11
- 지방하천 용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0호) ..... 16
-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1호) ..... 21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2호) ..... 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3호) ..... 25

도 의 회

■ 훈 령

-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7호) ..... 33

**시 군**

**■ 고 시**

-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181호) ..... 49
- 영주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05호) ..... 53
-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5-86호) ..... 58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5-87호) ..... 63
- 경산 도시관리계획(자인 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96호) ..... 69
-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97호) ..... 89

**■ 공 고**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5-1696호) ..... 92
-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  
(고령군 공고 제2025-1081호) ..... 94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규칙 제3096호

##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도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8호

## 지방하천 대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대곡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목적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토평교 선형 변경 공사」와 관련된 대곡천 일부 구간의 횡단시설물 계획(No.1+400 토평교 재가설)을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 (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계획하폭(변경)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곡천	0+000	대곡천 종점	479	479	479	479	75.34	75.34	62	62
	0+781	금혁천 합류전	367	367	367	367	76.91	76.91	56	56
	1+100	금촌천(소) 합류전	275	275	275	275	77.28	77.28	50	50
	1+363	토평교(철거)	275	275	275	275	77.94	77.94	50	50
	1+400	토평교(이설)	275	275	275	275	77.94	78.12	50	50
	3+300	정골천(소) 합류전	275	275	275	275	85.30	85.30	40	40
	3+900	신촌천(소) 합류전	209	209	209	209	88.78	88.78	33	33
	5+000	칠곡천(소) 합류전	169	169	169	169	97.57	97.57	20	20
	5+081	팔조천(소) 합류전	124	124	124	124	98.97	98.97	19	19
	6+142	가곡천(소) 합류전	111	111	111	111	110.74	110.74	15	15
	8+193	당골천(소) 합류전	70	70	70	70	144.79	144.79	10	10

※ 주요 변경 내용 : No.1+363 토평교 철거 후 이설(No.1+400)에 따른 계획홍수위 변경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청도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청도군 건설과(054-370-2337)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대곡천	지방 하천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97번지선	경북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793-89번지선 청도천(지방) 합류점	9.37	397,004	397,279 (증 275)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변경사유 : 교량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해당 구간 하천구역 일부 변경

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청도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청도군 건설과(054-370-233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9호

## 지방하천 소서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소서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 가. 하천기본계획(변경) 목적

영덕군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69호선 대지교량 개체공사」와 관련된 소서천 일부 구간의 횡단시설물 계획(No.0-008, 대지교 신설)을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변경)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서천	No.0-42	신규종점	-	540	-	540	-	42.36	-	70
	No.0	소서천종점	540	540	540	540	42.80	42.80	70	70
	No.10+005	용덕천합류전	275	275	275	275	48.78	48.78	78	78
	No.19+055	큰골천1합류전	265	265	265	265	55.70	55.70	61	61
	No.33+047	상오교지점	260	260	260	260	69.42	69.42	45	45
	No.42+025	뒷골천합류전	245	245	245	245	77.00	77.00	21	21
	No.44+005	큰골천2합류전	205	205	205	205	78.99	78.99	43	43
	No.47+040	용전천합류전	185	185	185	185	81.27	81.27	21	21
	No.60+075	앞골천합류전	160	160	160	160	99.37	99.37	24	24
	No.72+015	천련곡천합류전	105	105	105	105	113.11	113.11	21	21
	No.82+090	우안세천합류전	60	60	60	60	128.98	128.98	22	22
	No.84+042	소서천기점 (달산저수지지점)	60	60	60	60	133.85	133.85	8	8

※ 변경사유 : 소서천 횡단시설물인 대지교 신설에 따른 하천 종점(변경)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안별	지구 구분	연장 (km)	비고
소서천	No.0-42 ~ No.3+0	좌안, 우안	복원	0.342	
	No.3+00 ~ No.28+00	좌안, 우안	보전(일반보전)	2.500	
	No.28+00 ~ No.42+37	좌안, 우안	복원	1.440	
	No.42+37 ~ No.62+70	좌안, 우안	보전(일반보전)	2.030	
	No.62+70 ~ No.65+30	좌안, 우안	복원	0.260	
	No.65+30 ~ No.84+42	좌안, 우안	보전(일반보전)	1.91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덕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영덕군 건설과(☎054-730-6526)

## 2.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구분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소서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251번지선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서천(지방) 합류점	8.440	대지교 신설에 따른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251번지선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63-163번지선 대서천(지방) 합류점	8.482	

나. 지정·변경일 : 고시일과 같음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소서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251번지선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서천(지방) 합류점	8.440	369,340	·결정일 : 2014.12.01. (경상북도 고시[2014-418호])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수립
		변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251번지선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63-163번지선 대서천(지방) 합류점	8.482	373,135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영덕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영덕군 건설과(☎054-730-652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아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0호

## 지방하천 용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용소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 현황

수 계	하천명	유역 면적 (km <sup>2</sup> )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 량 (백만m <sup>3</sup> )	유출량(백만m <sup>3</sup> )			손실량 (백만m <sup>3</sup> )
					홍수시	정상시	계	
낙동강	용소천	30.03	1,090.90	32.76	12.11	4.98	17.09	15.67

##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sup>2</sup> )	계획 규모 (년)	기본 홍수량 (m <sup>3</sup>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sup>3</sup> /s)	하도분담 홍수량 (m <sup>3</sup> /s)	계획 홍수량 (m <sup>3</sup> /s)
용소천	용소천 종점(낙동강 합류점)	30.03	80	329	-	250	250
	갱골천(소) 합류후	28.10	〃	312	-	250	250
	갱골천(소) 합류전	12.64	〃	161	-	60	60
	박실천(소) 합류후	12.58	〃	161	-	60	60
	박실천(소) 합류전	9.64	〃	134	-	25	25
	방수로(강정배수문) 종점	9.58	-	-	114	-	-
	방수로 분기점	9.54	〃	134	-	135	135
	두리골(샛천) 합류후	9.25	〃	134	-	135	135
	두리골(샛천) 합류전	9.13	〃	134	-	135	135
	샘지골(샛천) 합류후	8.85	〃	134	-	135	135
	샘지골(샛천) 합류전	8.68	〃	132	-	135	135
	원당뒤틀골(샛천) 합류후	8.17	〃	129	-	130	130
	원당뒤틀골(샛천) 합류전	7.53	〃	121	-	125	125
	신기천(소) 합류후	7.44	〃	121	-	125	125
	신기천(소) 합류전	4.50	〃	76	-	80	80
	용소천시점(용소저수지)	4.26	〃	76	-	80	80

##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량 (m <sup>3</sup>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용소천	YS00	용소천 종점 (낙동강 합류점)	485	329	425	250	19.64	18.99	102	11
	YS01'	갱골천(소) 합류후	485	312	425	250	20.17	19.29	60	58
	YS01	갱골천(소) 합류전	240	161	115	60	20.17	19.29	60	58
	YS02'	박실천(소) 합류후	240	161	115	60	20.26	19.31	20	19
	YS02	박실천(소) 합류전	220	134	60	25	20.26	19.31	20	19
	-	방수로(강정배수문) 종점	-	-	-	-	23.62	23.78	30	30
	YS03	방수로 분기점	220	134	220	135	23.62	23.78	30	30
	YS04'	두리골(샛천) 합류후	220	134	220	135	25.92	24.96	25	26
	YS04	두리골(샛천) 합류전	220	134	220	135	25.92	24.96	25	26
	YS05'	샘지골(샛천) 합류후	-	134	-	135	29.84	28.93	34	31
	YS05	샘지골(샛천) 합류전	-	132	-	135	29.84	28.93	34	31
	YS06'	원당뒹골(샛천) 합류후	220	129	220	130	33.51	32.67	30	25
	YS06	원당뒹골(샛천) 합류전	210	121	210	125	33.51	32.67	30	25
	YS07'	신기천(소) 합류후	210	121	210	125	37.72	36.90	21	19
	YS07	신기천(소) 합류전	125	76	125	80	37.72	36.90	21	19
YS08	용소천시점 (용소저수지)	125	76	125	80	46.37	44.27	12	8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안별	지구 구분	연장(km)	비고
용소천	-0+027 ~ 5+030	좌안	복원	5,030	
	-0+027 ~ 5+030	우안	복원	5,03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고령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고령군 건설과(054-950-6632)

2.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용소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용소저수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낙동강 합류점)	5.03	-
		변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65-3번지선 (용소저수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85-2번지선 낙동강(국가) 합류점	5.03	

나. 지정·변경일 : 고시일과 같음

###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용소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용소저수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낙동강 합류점)	5.03	303,729	·결정일 : 2021.07.22. (경상북도 고시2021-245호)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변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용소리 65-3번지선 (용소저수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삼대리 85-2번지선 낙동강(국가) 합류점	5.03	253,743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 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고령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73), 고령군 건설과(054-950-663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1호

##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2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63	-	1,763	100.0	
관리 지역	소 계	-	증) 1,763	1,763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1,763	1,763	100.0	
농림지역		1,763	감) 1,763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sup>2</sup>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24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763	100이하	·경산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29조,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③ 노선명	④ 구간	⑤ 연장 (m)	⑥ 주요 경과지	⑦ 도로구역 결정사유	⑧ 비고
기정	국가지원 지방도	제79호	창녕~ 안동선	시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6-2 종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8-1	61	-	실제 도로여건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
변경	국가지원 지방도	제79호	창녕~ 안동선	시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6-2 종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8-1	60	-		

## 2.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제79호	노선명	창녕~안동선
접도구역 지정 (변경)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6-2</li> <li>- 종점 :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538-1</li> </ul>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li> <li>• 교통에 대한 위협방지</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서류 : 지형도면[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li> </ul>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현 도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구간

- 해당사항 없음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 (도면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273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변경 구역	지방도	제923호	선남~ 문경	의성군 안계면	금회 사업면적 31,289㎡	의성군 안계면 용거리 929-1번지	의성군 안계면 용거리 487-100번지	-	160.78 (1.0)

※ ( ) : 금회 사업 연장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 923호선의 일부노선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구간**

- 해당없음 (기 공사완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참조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17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지방도 923호선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계				34,081.2	31,289						
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0-12	답	401	401		국(국토 교통부)				
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0-13	답	1,275	1,275		국(국토 교통부)				
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1-4	임	45	45		국(국토 교통부)				
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2-1	전	457	457		국(국토 교통부)				
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68	답	879	879		국(국토 교통부)				
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70	전	166	166		국(국토 교통부)				
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73	전	115	115		국(기획 재정부)				
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74	답	30	30		국(기획 재정부)				
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75	전	315	315		국(국토 교통부)				
1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76	전	590	590		국(국토 교통부)				
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7-1	전	628	628		국(국토 교통부)				
1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7-29	대	123	123		국(국토 교통부)				
1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7-30	전	259	259		국(국토 교통부)				
1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7-31	전	15	15		국(국토 교통부)				
1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66-3	전	517	517		국(국토 교통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및 내용	
1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0	임	942	942		국(국토 교통부)				
1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2	임	52	52		국(국토 교통부)				
1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3	대	677	677		국(국토 교통부)				
1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5	임	122	122		국(국토 교통부)				
2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6	임	2,136	2,136		국(국토 교통부)				
2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8	임	343	343		국(국토 교통부)				
2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19	임	32	32		국(국토 교통부)				
2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20	임	927	927		국(국토 교통부)				
2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23	임	62	62		국(국토 교통부)				
2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24	임	13	13		국(국토 교통부)				
2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3	임	46	46		국(국토 교통부)				
2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6	임	28	28		국(국토 교통부)				
2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5-11	답	16	16		국(국토 교통부)				
2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5-12	답	158	158		국(국토 교통부)				
3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5-13	답	39	39		국(국토 교통부)				
3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5-14	답	48	48		국(국토 교통부)				
3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36	답	103	103		국(국토 교통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및 내용	
3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44	답	555	14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 어촌공사				
3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46	답	255	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 어촌공사				
3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71	답	314	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 어촌공사				
3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85	답	202	202		국(국토 교통부)				
3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86	답	59	59		국(국토 교통부)				
3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87	답	638	638		국(국토 교통부)				
3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88	답	231	93		국(국토 교통부)				
4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89	답	264	264		국(국토 교통부)				
4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0	답	211	211		국(국토 교통부)				
4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1	답	378	378		국(국토 교통부)				
4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2	답	36	36		국(국토 교통부)				
4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3	답	399	399		국(국토 교통부)				
4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5	답	406	406		국(국토 교통부)				
4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97	답	805	805		국(국토 교통부)				
4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0	답	213	213		국(국토 교통부)				
4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5	답	157	131		국(국토 교통부)				
4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6	답	5	5		국(국토 교통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및 내용	
5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7	답	53	53		국(국토 교통부)				
5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8	답	80	80		국(국토 교통부)				
5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09	답	38	25		국(국토 교통부)				
5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7-111	답	24	24		국(국토 교통부)				
5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89-5	전	51	51		국(국토 교통부)				
5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89-6	전	461	461		국(국토 교통부)				
5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5-21	답	1,113	1,113		국(국토 교통부)				
5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5-23	답	964	964		국(국토 교통부)				
5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6-5	답	524	524		국(국토 교통부)				
5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7-1	묘	1,441	1,441		국(국토 교통부)				
6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8-3	전	172	172		국(국토 교통부)				
6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9-4	유	376	376		국(국토 교통부)				
6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0-1	답	593	593		국(국토 교통부)				
6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0-4	도	317	59		국(국토 교통부)				
6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0-5	전	224	224		국(국토 교통부)				
6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1	전	80	80		국(국토 교통부)				
6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4	전	16	16		국(국토 교통부)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및 내용	
6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9	전	57	57		경상북도				
6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2-1	답	645	624		국(국토 교통부)				
6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6	답	1,358	1,358		국(국토 교통부)				
7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8	답	1,494	1,494		국(국토 교통부)				
7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0	답	632	632		국(국토 교통부)				
7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1	유	345	345		국(국토 교통부)				
7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4	답	9	6		국(국토 교통부)				
7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5-1	답	594	594		국(국토 교통부)				
7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6-1	답	288	288		국(국토 교통부)				
7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8-1	답	1,523	1,523		국(국토 교통부)				
7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9-1	답	1,507	316		국(국토 교통부)				
7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6	전	343	343		국(기획 재정부)				
7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7	답	581	581		국(국토 교통부)				
8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8	전	580	580		국(국토 교통부)				
8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07-8	도	617.2	382		국(국토 교통부)				
8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26-1	구	271	229		국(농림 축산식품부)				
8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26-2	구	23	8		의성군				



**도 의 회**

**후 명**

경상북도의회 훈령 제117호

##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최 병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입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② 자료실 관리 부서의 장(이하 “관리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선정, 수집, 분류, 보존, 폐기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관리
3. 그 밖의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담당 직원을 배치한다.

제3조(자료의 종류) 자료실에 비치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2. 법령, 조례, 규칙 등 각종 법규 자료
3.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4. 콤팩트디스크(CD),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등 시청각 자료
5. 그 밖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제4조(자료의 선정 및 수집) ①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별표 1에 따라 선정한다.

②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제출
2. 중앙부처, 타 광역 자치단체, 연구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의 기증 또는 구입
3. 의회 각 부서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간한 자료의 제출
4. 필요한 도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며,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에 필요한 그 밖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

제5조(자료관리) ①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된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자료실 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점검 및 목록작성
2. 자료의 보존 및 대출 자료 회수 실태 점검
3. 도난방지, 화재 예방 등 안전 대책 마련

제6조(희망도서신청) 경상북도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자료실이 소장하지 않은 도서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도서의 구입 여부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관리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및 자료실 등과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제2장 열람 및 대출

제8조(이용자의 범위) 자료실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3. 정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학교의 임직원
4.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일반 도민
5. 그 밖에 관리 부서의 장이 열람 및 대출자로 지정한 자

제9조(이용절차)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자료 열람 시 담당 직원의 안내
2. 자료 대출 시
  - 가. 직접 방문
  - 나.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 다. 자료실 회원 가입

제10조(이용시간) 자료실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1조(자료의 열람) 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 회원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 20권 / 30일
2. 의회 및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 5권 / 14일
3. 그 밖의 일반 도민 등 : 3권 / 14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권수 및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를 타인이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출받은 이용자에게 있다.

④ 대출받은 자료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및 분실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자료
2. 회의록, 보고서 등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4.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
5.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⑥ 이용자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신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반납)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대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관리 부서의 장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반납일이 휴일 또는 자료실의 미운영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운영일(자료실의 이용 가능일을 말한다)을 반납일로 한다.

③ 자료를 대출받은 이용자는 퇴직, 전직, 휴직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교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자료실에 통보하고 대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자료 반납 독촉) 대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 반납 요구서 발송 등을 통해 대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3장 자료의 손실·망실 처리 등

제15조(변상 조치)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 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최신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이 동일하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3. 동일 저자가 집필한 유사한 주제의 자료
4. 그 밖에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관리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6조(자료의 폐기) ① 관리 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제17조(자료실 이용의 정지)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자료실 이용을 중지하고 퇴실을 요구하며, 이용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8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료실 운영 이용수칙 등에 따른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법자료실 자료선정 기준

### 1. 자료의 일반적 선정기준

- 가. 입법자료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권을 원칙으로 함(단,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복본으로 구입할 수 있음)
- 나. 최신 정보의 신간 자료를 우선 선정
- 다. 동일한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된 자료는 그 분야의 권위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선정
- 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도서 선정에 객관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를 우선 선정
- 마. 의회 및 경상북도청, 각 시군, 그 외 경상북도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입수

### 2. 귀중자료의 선정기준

- 가. 귀중자료는 의회 자료로서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자료의 특이성, 학술연구의 원자료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리 부서의 장이 선정
- 나. 그 외 귀중자료의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 규정에 따름

### 3. 자료의 유형별 선정기준

- 가. 일반도서

- 1)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
- 2) 입법 정책 연구에 유용한 도서
- 3) 각 주제별 형평성을 고려한 도서 선정
- 4) 이용자의 교양 및 학습에 기여하는 도서

나. 연속간행물 등 기타

- 1)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 2) 교양 및 시사 부문 잡지는 의정 활동에 유익한 자료를 선정

다. 비도서 자료

- 1)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
- 2) 자료의 유용성과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

4. 자료의 주제별 선정기준

가. 총류(000)

- 1) 이용자의 정보 조사를 지원하는 각종 참고자료
- 2) 첨단 미디어 및 컴퓨터 관련 자료는 최신성을 유지

나. 철학(100)

- 1) 동서양 철학에 관한 서적을 균형 있게 수집
- 2) 자기 관리, 인간 관계 등을 다루는 자기 계발 관련 자료는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다. 종교(200)

- 1)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 자료
- 2)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특정 종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리서는 제외
- 3)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담고 있는 자료는 제외

#### 라. 사회과학(300)

- 1)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기본 도서를 균형 있게 선정하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는 적극적으로 선정
- 2) 사회 사조, 사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선정
- 3)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

#### 마. 자연과학(400)

- 1)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서, 해설서 및 참고자료를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
- 2) 자료의 수명 주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최신의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

#### 바. 기술과학(500)

- 1)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학기술 지식 습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및 참고자료를 균형 있게 선정
- 2)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를 선정

#### 사. 예술(600)

- 1) 미적 정서와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양서 및 실용 자료를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

- 2)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신체 또는 성(性)의 묘사가 저속하게 표현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삽화 및 사진이 과도하게 수록된 작품은 가급적 배제

#### 아. 언어(700)

- 1)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
- 2) 수험서, 학습 참고서 등 개인 학습 위주의 자료나 일시적 성격이 강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

#### 자. 문학(800)

- 1)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
- 2) 문학 작품은 창작물을 우선하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선정

#### 차. 역사(900)

- 1) 동서양의 역사에 대한 사료를 실증적으로 분석·고증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최신 연구 동향과 관점이 반영된 자료를 선정
- 2) 한국 역사와 관련된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

### 5. 자료 선정 제외 기준

#### 가. 유형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 1) 소책자(단, 유아 및 어린이 도서는 제외), 홍보 책자, 문고
- 2) 만화, 판타지, 무협, 로맨스 등
- 3) 그 밖에 관리 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나. 내용에 따른 선정 제외 자료

- 1) 폭행,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묘사하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의 자료
- 2) 범죄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료
- 3)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료
- 4) 성윤리를 왜곡하는 자료
- 5)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 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6) 저속한 언어를 남용하는 자료

6. 기타

고가의 자료는 질적 요소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별표 2]

## 입법자료실 자료의 폐기 기준

### 1. 폐기의 일반적 기준

#### 가.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

- 1)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자료
- 2) 법·제도 개정 등으로 시대성이 상실된 자료
- 3) 장기 보관 필요성이 없는 정기간행물 (단순 소식지 및 안내지 등)
- 4) 총류 자료 중 장기 보관 필요성이 없는 자료 (색인지, 주소록, 관보, 요람 등)
- 5) 언어 및 어학 자료 중 10년 이상 경과된 문법·작문·회화 관련 자료

#### 나. 복본 또는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

- 1)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 중 필요 부수를 초과한 복본 (통상 10년 경과 도서는 1권, 5~10년 경과 도서는 2권만 보존)
- 2) 일반도서 중 대출 또는 이용이 10년 동안 전혀 없는 자료의 복본
- 3) 신판·증보판이 발간된 구판 자료의 복본
- 4) 복본은 아니지만, 내용이 중복되어 활용 가치가 낮은 자료

#### 다. 망실 자료

- 1) 장기간 행방불명된 자료
- 2) 대출자의 사망·전직·퇴직 등으로 1년 이상 미반납된 자료

#### 라. 대체 가능한 자료

- 1) 전자열람 등 외부에서 대체 가능한 자료 (총류 중심)

2. 폐기할 수 없는 자료 기준 (폐기 예외 사항)

가. 경상북도기관 발간 자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나.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 통계자료 등 향후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

다. 절판된 자료: 이용도가 낮더라도 절판된 자료는 보존

라. 향토 자료: 경상북도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

마. 희귀 자료: 이용빈도가 낮더라도 희귀본은 보존

[별지 제1호서식]

### 희망도서 신청서

자료명	저 자	발행년도	발행처	비고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 자료 반납 요구서

수신: (소속 또는 주소)

성명:                    귀하

귀하께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에서 대출하신 아래 자료의 대출 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 해당 자료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대출자료명	저 자 명	발행처(출판사)	대출일자	비 고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5-181호

##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양호동1번지 일원의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7. 17.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미 도시계획사업(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신축공사(이전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	(기정) ○ 대지면적 : 660,915㎡ ○ 규 모 : 주건축물 27동 부속건축물 7동 ○ 건축면적 : 44,320.78㎡ ○ 연 면 적 : 185,430.92㎡	(변경) ○ 대지면적 : 660,915㎡ ○ 규 모 : 주건축물 27동 부속건축물 7동 ○ 건축면적 : 44,333.25㎡ ○ 연 면 적 : 185,956.6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5. 사업시행기간	○ 1998. 10. 09. ~ 2030. 12. 31.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거의동	468	학교 용지	274,837	274,837		국.교육부
2	거의동	496-2	임	576	576		국.교육부
3	거의동	503-1	전	2,129	2,129		국.교육부
4	거의동	504	전	2,271	2,271		국.교육부
5	거의동	504-1	전	648	648		국.교육부
6	거의동	산10-1	임	25,342	25,342		국.교육부
7	거의동	산11-2	임	7,896	7,896		국.교육부
8	거의동	산12-1	임	2,568	2,568		국.교육부
9	거의동	산15-1	임	18,281	18,281		국.교육부
10	거의동	산16	임	26,182	24,462		국.교육부
11	거의동	산18-1	임	3,348	3,348	대구 부봉산정187	장*순 외5
12	거의동	산22-3	임	3,876	3,876		국.교육부
13	거의동	산23	임	12,974	12,974		국.교육부
14	거의동	산24	임	12,238	12,238		국.교육부
15	거의동	산25	임	12,300	12,300		국.교육부
16	거의동	산26-1	임	1,972	1,972		국.교육부
17	거의동	산48	임	39,669	31,137		국.교육부
18	거의동	산49	임	4,203	4,203		국.교육부
19	거의동	산50	임	9,796	9,796		국.교육부
20	거의동	산51	임	4,158	4,158		국.교육부
21	거의동	산52	임	10,875	10,875		김*원 외1인
				1026	1026		국.교육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2	거의동	산53	임	29,481	29,481		국.교육부
23	거의동	산56-1	임	38,019	38,019		국.교육부
24	양호동	1	학교 용지	83,628	82,730		국.교육부
25	양호동	13 - 2	학교 용지	1,540	1,540		국.교육부
26	양호동	15	전	2,182	878		국.교육부
27	양호동	19	답	2,684	1,674		국.교육부
28	양호동	산11-1	임	4,754	4,692		국.교육부
29	양호동	산12-1	임	4,284	4,284		국.교육부
30	양호동	산16	임	11,480	11,480		국.교육부
31	양호동	산16-1	임	933	933		국.교육부
32	양호동	산16-2	임	6,251	6,251		국.교육부
33	양호동	산16-4	임	3,017	3,017		국.교육부
34	양호동	산16-5	임	6,049	6,049		국.교육부
35	양호동	산16-6	임	1,171	1,171		국.교육부
36	양호동	산16-12	임	1,803	1,803		국.교육부
계36필지				850,411	660,915		

영주시 고시 제2025-105호

## 영주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 사업인 『상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도로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영 주 시



##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921-1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호선) 사업
- 2) 명 칭 : 상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B=12~15m, L=50m (가감속차로 설치 및 차선정비)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 엘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향아
- 2)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돈길로 242, 3층(달동)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10. 31.

###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영주시 귀속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비고
								권리	성명	주소	
1	영주시 상망동	849-16	대	9.5	9.5	주식회사 ****신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층				
2	영주시 상망동	849-11	도	57.0	5.3	영주시					
3	영주시 상망동	861-12	구	151.0	17.6	국(농림축 산식품부)					
4	영주시 상망동	861-86	구	44.7	36.7	국(농림축 산식품부)					
5	영주시 상망동	921-12	대	51.1	48.0	국(기획재 정부)					
6	영주시 상망동	921-13	대	13.3	13.3	국(기획재 정부)					
7	영주시 상망동	921-14	대	17.9	17.9	국(기획재 정부)					
8	영주시 상망동	921-11	천	1,157.2	198.6	국(국토교 통부)					
9	영주시 상망동	922-3	도	8.8	8.8	국(기획재 정부)					
10	영주시 하망동	422-60	천	1,226.0	315.9	국(국토교 통부)					
11	영주시 상망동	921	천	1,242.0	83.4	국(국토교 통부)					
계				3,978.5	755						

2)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영주시)	편입지번	물건의 표시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 위		성명	주 소	성명	등기부 상주소 (실제송 달주소)	권 리 관 계	
총계			9건		-			1명					
1	상망동	840-1대, 921-1대, 921-12대 , 922-2도	주택 (폐가)	블록/ 스레트지붕 5.60mx9.20m	51.50	m <sup>2</sup>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2	상망동	840-1대, 921-1대, 921-12대	주택 (폐가)	블록/ 스레트지붕 CAD산출	19.30	m <sup>2</sup>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3	상망동	840-1대, 921-1대, 921-12대 ,922-2도	폐가	블록/ 스레트지붕 CAD산출	75.10	m <sup>2</sup>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4	상망동	840-1대, 921-1대, 922-2도	폐가	블록/ 스레트지붕 CAD산출	47.20	m <sup>2</sup>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5	상망동	921-12대	외부 화장실	블록/ 스레트지붕 1.10mx1.20m	1.30	m <sup>2</sup>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6	상망동	921-12대 ,922-2도	담장	블록조적조 H=1.60m, L=24.60m	1	식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일련 번호	소재지 (영주시)	편입지번	물건의 표시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 위		성명	주 소	성명	등기부 상주소 (실제송 달주소)	권 리 관 계	
7	상망동	922-2도	대문	철재 W=1.80m, H=1.40m	1	식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8	상망동	921-12대	대문	목재 W=1.00m, H=1.60m	1	식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9	상망동	922-2도	보일러	0.90x0.40x0.60	1	식	1/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10, **동 **호				무허가

2.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고시 제2025-86호

##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 7. 17.

영 천 시 장

- 1. 실효일자 : 2025. 7. 18.
- 2.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
  - 가. 영천 도시지역
    -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	국지 도로	50	대로1-2	중로2-12	일반 도로	-	경고제208호 (1987.12.19.)	부분실효
변경	중로	1	10	20	국지 도로	50	대로1-2	중로2-1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2	15	국지 도로	295	중로1-28 (망정동 474)	중로2-16 (망정동 471-7)	일반 도로	-	경고제132호 (1978.04.28)	부분실효
변경	중로	2	32	8~15	국지 도로	295	중로1-28 (망정동 474-2)	중로2-16 (망정동 534-1)	일반 도로	-	-	-
폐지	중로	3	완1	12	집산 도로	219	완산동 703-2	완산동 729-54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중로	3	완2	12	집산 도로	163	완산동 703-2	완산동 705-2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중로	3	완3	12	집산 도로	154	완산동 705-2	완산동699-4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기정	소로	2	완2	8	국지 도로	123	완산동702-13	완산동 729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부분실효
변경	소로	2	완2	8	국지 도로	108	완산동729-14	완산동729-92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2	완4	8	국지 도로	119	완산동 704-2	완산동 728-8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소로	2	완5	8	국지 도로	116	완산동 706-2	완산동 728-8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소로	2	완7	8	국지 도로	109	완산동 705-2	완산동709-17	일반 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완1	4	특수 도로	56	완산동 731-2	완산동 729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완2	4	특수 도로	37	완산동 709-16	완산동709-65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폐지	소로	3	완3	4	특수 도로	34	완산동 699-4	완산동699-4	보행자 전용도로	-	경고제199호 (2005.07.18)	전체실효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0	중로1-10	· 가각 정비 - B = 20 - L = 50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 구간 가각 정비
중로2-32	중로2-32	· 폭원 축소 - B = 15 → 8~15m (감 0~7m) - L = 29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 구간 제척으로 폭원 축소
중로3-완1	-	· 노선 폐지 - B = 12m - L = 21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중로3-완2	-	· 노선 폐지 - B = 12m - L = 163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중로3-완3	-	· 노선 폐지 - B = 12m - L = 15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2-완2	소로2-완2	· 연장 축소 - B = 8m - L = 123 → 108m (감 15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 구간 제척으로 연장 축소
소로2-완4	-	· 노선 폐지 - B = 8m - L = 11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2-완5	-	· 노선 폐지 - B = 8m - L = 11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2-완7	-	· 노선 폐지 - B = 8m - L = 10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3-완1	-	· 노선 폐지 - B = 4m - L = 56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3-완2	-	· 노선 폐지 - B = 4m - L = 37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3-완3	-	· 노선 폐지 - B = 4m - L = 34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완1	대로 1-2호선변	완충 녹지	대로1-2호선과 완산지구단위계획 구역 접합부	4,793.6	감)1,492.6	3,301	경고 제2005-199호 (2005.07.18)	
변경	완2	대로 1-7호선변	완충 녹지	대로1-7호선과 완산지구단위계획 구역 접합부	1,411.0	감)1,072	339	경고 제2005-199호 (2005.07.18)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1	대로1-2호선변	· 완충녹지 축소 A = 4,793.6 → 3,301㎡ 감) 1,49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 개설된 완충녹지 부분 실효
완2	대로1-7호선변	· 완충녹지 축소 A = 1,411 → 339㎡ 감) 1,07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 개설된 완충녹지 부분 실효

나. 신녕 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271	왕산리 344-1	소로2-12 (왕산리 379)	일반 도로	-	경고제94호 (1975.05.17)	전체 실효
폐지	소로	3	76	6	국지 도로	101	소로2-15 (화성리 847-5)	소로2-4 (화성리 328-9)	일반 도로	소로 2-4	경고제205호 (1977.06.29)	전체 실효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5	-	· 노선 폐지 - B = 15m - L = 27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소로3-76	-	· 노선 폐지 - B = 6m - L = 101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미개설된 노선 폐지

4.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3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고시 제2025-87호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7. 17.

영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완산동 728-22번지 일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위 치	비고
①	미소지움2차~신 완산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중로3-완6호선)	영천시 완산동 728-22번지 일원	
②	미소지움2차~신 완산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소로2-완9호선)	영천시 완산동 709-12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미소지움2차 ~ 신 완산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 3. 사업별 목적 및 내용 :

구분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내용	비 고
①	미소지움2차~신 완산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중로3-완6)사업	도로개설 L=155m B=12.0m	
②	미소지움2차~신 완산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소로2-완9호선)사업	도로개설 L=192.6m B=8.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30. 7. 17.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아래참조

7.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8.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편입토지 조서 (중로3-완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천시 완산동	728-22	답	24	24	국	영천시				
2	"	728-55	과	44	44	김*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 10*동 12**호 (사월동, 대구시지 푸르지오아파트)	영천** 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시장로 **	근저당 및 지상권	
						심*례	경북 영천시 시장로 **(완산동)				
3	"	1325-12	도	1,587	115	국	국토교통부				
4	"	709-139	전	404	404	도*호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 111, 206동 26**호(완산동, 영천완산미소지움2차)	안강** 협동 조합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	근 저당권	
5	"	710-6	잡	33	33	김*선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4길 1** (완산동)	영천** 농업협 동조합	경북 영천시 금노동 5**-2	근저당 및 지상권	
						이*락	경북 영천시 완산동 7**				
6	"	709-18	전	60	55	국	기획재정부				
7	"	709-119	전	3	3	국	기획재정부				
8	"	709-112	도	1,267	178	국	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	709-137	과	375	375	주식회사 피*케*	경북 영천시 영화로 3**-1(조교동)	고경** 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1**7	근저당 및 지상권	
								임고** 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	근 저당권	
10	"	709-135	과	217	217	김*덕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로 **, 101동 1*05호 (야사동,우방타운)	농협**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근 저당권	
11	"	635-9	과	620	303	김*덕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로 **, 101동 1*05호 (야사동,우방타운)	농협**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근 저당권	
12	"	709-133	과	362	63	이*원	경북 영천시 완산5길 111, 2**동 1**1호 (완산동, 영천완산 미소지움*차)	**은행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근 저당권	

○ 지장물 조서 (중로3-완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규 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영천시 완산동	709-18	건물	판넬	1식	김*선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4길 *** (완산동)				
						이*락	경북 영천시 완산동 ***				
2	"	709-119	건물	블록 조슬 레이 트	1식	김*선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4길 *** (완산동)				
						이*락	경북 영천시 완산동 ***				

○ 편입토지 조서 (소로2-완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천시 완산동	709-123	과	13	13	국	영천시				
2	"	709-109	대	23	23	국	영천시				
3	"	709-133	과	362	299	이*원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 111,2**동 1**1호 (완산동,영천완산 미소지움2차)	*은행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0	근저당 권	
4	"	635-9	과	620	317	김*덕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로 **, 101동 1*05호 (야사동,우방타운)	농협**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근저당 권	
5	"	709-131	과	166	166	김*덕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로 **, 101동 1*05호 (야사동,우방타운)	농협**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근저당 권	
6	"	709-141	과	73	73	국	국(재무부)				
7	"	708-2	과	24	24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8	"	707-7	과	464	140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	707-2	과	13	13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10	"	699-20	과	9	9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권	
11	"	699-19	과	104	71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12	"	699-12	과	231	231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13	"	699-15	과	136	136	대한**교 **회사랑 의교회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2** (완산동)	영천** 업협동 조합	경북 영천시 호국로 **	근저당 및 지상권	
14	"	1324-22	도	26	3	국	국(기획재정부)				

경산시 고시 제2025-96호

## 경산 도시관리계획(자인 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자인 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자인 서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준비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7	자인서부지구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807일원	81,340.9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13.12.23)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1,340.9	100.0	
도시지역	주거지역	81,340.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6,800.9	57.5	
	준주거지역	34,540.0	42.5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서부리	7층이하	21,120	경상북도고시 제2004-364호 (2004.12.13)	구역내 면적 (9,518㎡)

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있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340.9	-	81,340.9	100.0		
주거 용지	소계	48,388.8	감) 382.0	48,006.8	59.0		
	단독주택	24,755.2	-	24,755.2	30.4		
	준주거시설	23,633.6	감) 382.0	23,251.6	28.6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2,952.1	증) 382.0	33,334.1	41.0		
	도로	소계	19,751.0	-	19,751.0	24.2	
		도로	19,065.8	-	19,065.8	23.4	
		보행자도로	685.2	-	685.2	0.8	
	주차장	2,279.4	증) 382.0	2,661.4	3.3	3개소	
	공원 녹지	소계	7,410.7	-	7,410.7	9.2	
		공원	5,416.6	-	5,416.6	6.7	2개소
		녹지	1,994.1	-	1,994.1	2.5	2개소
	저류지	600.0	-	600.0	0.7	1개소	
	하천	2,911.0	-	2,911.0	3.6	1개소	

2) 교통시설(변경있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20	2,251	19,751.0	5	842	9,470.4	9	946	8,772.9	6	463	1,507.7
대로	2	320	934.6	-	-	-	-	-	-	2	320	934.6
중로	1	131	2,050.2	-	-	-	1	131	2,050.2	-	-	-
소로	17	1,800	16,766.2	5	842	9,470.4	8	815	6,722.7	4	143	573.1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자3	25-28	주간선 도로	1,209 (55)	대로2-자1 (동부리 205-4)	17호 광장 (울옥리 339-4)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제86호 (1973. 3. 3)	
기정	대로	3	자4	25-28	주간선 도로	786 (265)	16호광장 (서부리 334-1)	대로3-자3 (동부리 252-4)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990-36호 (1990. 3. 3)	
기정	중로	2	자인1	15	집산 도로	131	대로3-자4	중로2-자7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1	자인1	11	국지 도로	88	대로3-자4	소로2-자인3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1	자인2	11	국지 도로	247	중로2-자인1	중로2-자인1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1	자인3	11	국지 도로	189	소로1-자인5	중로2-자인1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1	자인4	11	국지 도로	188	소로1-자인5	중로2-자인1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1	자인5	11	국지 도로	130	대로3-자4	중로2-자7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1	8	국지 도로	51	소로2-자인2	소로2-자인3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2	8	국지 도로	119	소로1-자인1	소로2-자인8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3	8	국지 도로	225	소로1-자인2	대로3-자3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4	8	국지 도로	111	소로1-자인1	소로1-자인2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5	8	국지 도로	44	소로1-자인3	소로1-자인4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자인6	8	국지 도로	114	소로1-자인5	소로2-자인7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7	8	국지 도로	136	소로1-자인5	대로3-자4	일반 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2	자인8	8	특수 도로	15	대로3-자3	소로2-자인2	보행 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3	자인1	4	특수 도로	34	대로3-자4	소로1-자인2	보행 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3	자인2	4	특수 도로	33	소로1-자인4	중로2-자7	보행 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3	자인3	4	특수 도로	44	소로1-자인3	소로1-자인4	보행 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소로	3	자인4	4	특수 도로	32	대로3-자4	소로1-자인3	보행 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주) ( )는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연장임

나) 주차장(변경있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2,279.4	증) 382.0	2,661.4		
기정	자인1	주차장	서부리 807 일원	1,679.6	-	1,679.6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자인2	주차장	동부리 512 일원	599.8	-	599.8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신설	자인3	주차장	서부리 860 일원	-	증) 382.0	382.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자인3	주차장	◦ 자인3 주차장 신설 - A = 382.0㎡	◦ 자인 서부지구 내 준주거시설 이용객 및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추가 신설

3)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1,994.1		
기정	자인1	대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부리 538 일원	1,061.4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자인2	대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동부리 530 일원	932.7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5,416.6		
기정	자인1	자인1 소공원	소공원	서부리 771 일원	5,096.7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기정	자인2	자인2 소공원	소공원	동부리 508 일원	319.9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계							154	15~21	2,911.0		
기정	자인1	자인1 하천	소하천	자인면 서부리 736-16	자인면 서부리 772	-	154	15~21	2,911.0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600.0		
기정	자인1	유수지	저류시설	서부리 831 일원	600.0	경산시고시 제2013-557호 (2013.12.23)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9개소	24,755.2	66개소	24,755.2	
단1	단1	2,022.5	서부리 784	252.5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서부리 783	293.6	
			서부리 782	231.9	
			서부리 781	235.7	
			서부리 785	235.5	
			서부리 786	265.3	
			서부리 787	257.5	
			서부리 788	250.5	
단2	단2	1,790.0	서부리 775	327.3	"
			서부리 774	281.6	
			서부리 773	359.0	
			서부리 776	250.3	
			서부리 777	288.7	
			서부리 778	283.1	
단3	단3	2,617.0	동부리 517	992.4	- 획지분할 가능선으로 분할 권장 - 분할획지 최소면적 200㎡이상 (차량진출입구간 4m이상 확보)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동부리 518	400.0	
			동부리 519	400.0	
			동부리 520	498.2	
			동부리 521	326.4	
단4	단4	2,071.5	동부리 511	349.7	"
			동부리 510	349.7	
			동부리 509	349.6	
			동부리 513	345.5	
			동부리 514	338.6	
			동부리 515	338.4	
			동부리 499	401.9	
단5	단5	5,461.0	동부리 498	391.0	"
			동부리 497	390.9	
			동부리 496	390.9	
			동부리 495	391.2	
			동부리 494	391.2	
			동부리 493	391.2	
			동부리 500	304.3	
			동부리 501	460.2	
			동부리 502	439.2	
			동부리 503	292.3	
			동부리 504	338.0	
			동부리 505	513.2	
			동부리 506	365.5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단6	단6	2,624.3	서부리 815	542.7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서부리 816	319.8	
			서부리 817	449.0	
			서부리 821	328.2	
			서부리 820	328.2	
			서부리 819	328.2	
			서부리 818	328.2	
단7	단7	2,892.9	서부리 822	353.8	"
			서부리 823	353.9	
			서부리 824	354.1	
			서부리 825	370.1	
			서부리 829	356.2	
			서부리 828	368.2	
			서부리 827	368.3	
			서부리 826	368.3	
단8	단8	2,688.0	동부리 524	685.6	- 획지분할 가능선으로 분할 권장 - 분할획지 최소면적 200㎡이상 (차량진출입구간 4m이상 확보)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동부리 525	191.4	
			동부리 526	341.6	
			동부리 527	361.8	
			동부리 528	575.5	
			동부리 529	532.1	
단9	단9	2,588.0	동부리 532	431.5	"
			동부리 533	431.4	
			동부리 534	431.3	
			동부리 535	431.3	
			동부리 536	431.3	
			동부리 537	431.2	

나) 준주거시설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8개소	23,633.6	52개소	23,633.6	
			23,251.6	51개소	23,251.6	
기정	준1	준1	4,108.8	서부리 798	747.2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서부리 794	253.7	
				서부리 793	283.3	
				서부리 792	394.9	
				서부리 791	871.8	
				서부리 790	618.4	
				서부리 795	410.3	
				서부리 796	279.2	
기정	준2	준2	3,938.4	서부리 857	106.9	"
				동부리 488	152.8	
				서부리 856	229.6	
				동부리 487	24.6	
				서부리 855	329.1	
				서부리 854	430.9	
				서부리 853	350.5	
				서부리 852	350.6	
				서부리 858	344.8	
				서부리 859	382.3	
				서부리 860	382.0	
				서부리 861	329.0	
				동부리 489	52.8	
				서부리 862	444.7	
				동부리 488	27.8	
				변경	준2	
서부리 856, 동부리 487	254.2					
서부리 855	329.1					
서부리 854	430.9					
서부리 853	350.5					
서부리 852	350.6					
서부리 858	344.8					
서부리 859	382.3					
기정	준3	준3	1,549.5	서부리 800	283.4	"
				서부리 804	357.7	
				서부리 803	357.6	
				서부리 802	300.4	
				서부리 801	250.4	

구분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준4	준4	1,808.9	서부리 808	306.6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서부리 809	306.6	
				서부리 810	306.5	
				서부리 813	295.6	
				서부리 812	296.5	
				서부리 811	297.1	
기정	준5	준5	3,086.3	동부리 540	526.1	"
				동부리 541	615.6	
				동부리 542	368.3	
				서부리 864	247.8	
				서부리 865	650.2	
				서부리 866	678.3	
변경	준5	준5	3,086.3	동부리 540	526.1	"
				동부리 541	615.6	
				동부리 542, 서부리 864	616.1	
				서부리 865	650.2	
				서부리 866	678.3	
기정	준6	준6	4,027.4	서부리 849	537.2	"
				서부리 848	581.3	
				서부리 847	581.5	
				서부리 846	581.4	
				서부리 845	581.3	
				서부리 844	581.3	
				서부리 843	583.4	
기정	준7	준7	1,782.4	서부리 841	621.0	"
				서부리 840	581.4	
				서부리 839	580.0	
기정	준8	준8	3,331.9	서부리 837	572.4	"
				서부리 836	565.5	
				서부리 835	499.9	
				서부리 834	622.2	
				서부리 833	504.5	
				서부리 832	567.4	

## 2) 주차장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계	2개소	2,279.4	2개소	2,279.4	
변경		3개소	2,661.4	3개소	2,661.4	
기정	주1	주1	1,679.6	서부리 807	1,537.5	
변경				서부리 806	142.1	
변경	주1	주1	1,679.6	서부리 807, 서부리 806	1,679.6	
기정	주2	주2	599.8	동부리 512	599.8	
신설	주3	주3	382.0	서부리 860	382.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1) 주택건설용지(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단1 ~ 단9	단1-1~8 단2-1~6, 단3-1~5, 단4-1~6, 단5-1~14, 단6-1~7, 단7-1~8, 단8-1~6, 단9-1~6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건축물</li> <li>- 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li> <li>-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층 이하	
			필지당 가구수	8가구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li> <li>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2 이내에서 허용)</li> <li>-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1 ~ 1:3</li> <li>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토록 권장</li> <li>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li> <li>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대문은 투시형 권장</li> <li>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서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li> <li>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li> </ul>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 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li> </ul>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	단1 ~ 단9	단1-1~8 단2-1~6, 단3-1~5, 단4-1~6, 단5-1~14, 단6-1~7, 단7-1~8, 단8-1~6, 단9-1~6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건축물</li> <li>- 단, 공동주택(아파트)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li> <li>-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층 이하
				획지당 가구수	8가구 이하(단, 1개 획지와 합병 할 경우 16가구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2 이내에서 허용)</li> <li>-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1 ~ 1:3</li> <li>건축물의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토록 권장</li> <li>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li> <li>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대문은 투시형 권장</li> <li>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서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li> <li>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li> </ul>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li> </ul>			

나) 준주거시설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준1 ~ 준8	준1-1~9, 준2-1~11, 준3-1~5, 준4-1~6, 준5-1~5, 준6-1~7, 준7-1~3, 준8-1~6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학교제외)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li> <li>■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함)</li> <li>■ 공공용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li> <li>■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li> <li>■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li> <li>■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li> </ul>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로, 일연로 및 단지내 출입부에 접한 부분 : 2m</li> <li>■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 : 1m</li> <li>■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접한 부분 : 1~2m</li> </ul>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	준1 ~ 준8	준1-1~9, 준2-1~10, 준3-1~5, 준4-1~6, 준5-1~5, 준6-1~7, 준7-1~3, 준8-1~6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학교제외)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li> <li>■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함)</li> <li>■ 공공용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제외)</li> <li>■ 지정용도 건축물에 복합된 주거용도 설치가능</li> </ul> - 지하 및 지상 1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용도는 건축물 동별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li> </ul>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
				획지당 가구수	6가구 이하(단, 1개 획지와 합병 할 경우 12가구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li> <li>■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li> <li>■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li> <li>■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li> </ul>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효로 및 단지내 출입부에 접한 부분 : 2m</li> <li>■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 : 2m</li> <li>■ 보행자도로와 접한 부분 : 1m</li> </ul>

2) 주차장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주 1~2	주1, 주2	용도	지정용도 ■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불가
			색채	-
			옥외광고물	-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
			변경	주 1~3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불가			
색채	-			
옥외광고물	-			
건축(한계)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1 ~ 단9	단1-1~8, 단2-1~6, 단3-1~5, 단4-1~6, 단5-1~14, 단6-1~7, 단7-1~8, 단8-1~6, 단9-1~6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산도로에 접한 단독주택용지중 차량출입 불허시 집산도로 외 도로에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허</li> <li>■ 도로의 각각구간 차량출입불허</li> <li>■ 보행자도로 연결부 차량출입불허</li> </ul>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인접필지와 차량출입구 위치를 1곳으로 연결하여 설치 권장</li> </ul>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당 가구수 기준으로 가구당 1대이상 설치</li> </ul>

나) 준주거시설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준1 ~ 준8	준1-1~9, 준2-1~11, 준3-1~5, 준4-1~6, 준5-1~5, 준6-1~7, 준7-1~3, 준8-1~6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충로(대로3-자3호선), 원효로(대로3-4호선) 및 중로2-자인1호선변에 접한 부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상기 도로의 구간에서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준치시설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적용</li> <li>■ 사업구역에서 구역 외부로의 진출입부 및 일부 준주거시설용지 일원에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li> <li>■ 도로의 각각구간 차량출입불허</li> <li>■ 보행자도로연접부 차량출입불허</li> </ul>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인접필지와 차량출입구 위치를 1곳으로 연결하여 설치권장</li> </ul>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당 가구수 기준으로 가구당 1대이상 설치</li> </ul>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	준1 ~ 준8	준1-1~9, 준2-1~10, 준3-1~5, 준4-1~6, 준5-1~5, 준6-1~7, 준7-1~3, 준8-1~6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효로(대로3-4호선) 및 중로2-자인1호선변에 접한 부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상기 도로외 구간에서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적용</li> <li>■ 사업구역에서 구역 외부로의 진출입부 및 일부 준주거시설용지 일원에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li>■ 도로의 각각구간 차량출입불허</li> <li>■ 보행자도로연접부 차량출입불허</li> </ul>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인접필지와 차량출입구 위치를 1곳으로 연결하여 설치권장</li> </ul>
			주차장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당 가구수 기준으로 가구당 1대이상 설치</li> </ul>

2) 주차장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주1~ 주2	주1, 주2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도로 연접부 차량출입불허</li> </ul>
			연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에 접해있는 주차장의 경우 공원과 주차장 조성시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여 조성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로 조화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li> </ul>
변경	주1 ~ 주3	주1, 주2, 주3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연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에 접해있는 주차장의 경우 공원과 주차장 조성시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여 조성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로 조화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li> </ul>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5-97호

##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 일원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내 경산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1)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농업 기술센터	공공 청사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 일원	12,341	증) 1,928	14,269	경산시고시 제2008-65호 (2008.10.20.)	-

#### ■ 공공청사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공공 청사	·면적정정 및 면적증가 A = 12,341㎡ → 14,269㎡ 증) 1,928㎡ ※ 토지대장반영 면적정정 증) 165㎡ 금회 확장면적 증) 1,763㎡	·경산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 추가 확보

####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4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김천시 공고 제2025-1696호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천시고시제2023-105호(2023.7.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김 천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김천시 부곡동 910-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93호선, 주차장14, 어린이공원32)

나. 명칭 : 부곡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 소로2-193호선 B=8m, L=90m

나. 주차장14 : 1,454㎡

다. 어린이공원32 : A=1,902㎡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

나. 성명 : 김천시장

**5. 사업기간 : 2023.7.31. ~ 2023.12.31.**

**6. 공사완료일 : 2023.12.31. 끝.**

고령군 공고 제2025-1081호

##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

다산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7일

고령군수

1. 열람기간 : 2025.07.17. ~ 2025.07.31. (14일 이상)
2. 열람장소 : 고령군청 도시과
3. 열람내용 :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 결정(변경)(안)
4.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다산면 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호촌리 641-3번지 일원	139,389	-	139,389	경고제2006-11호 (06.01.05.)	
기정	2	곽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곽촌리 968번지 일원	101,196	-	101,196	경고제2006-11호 (06.01.05.)	
기정	3	차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월성리 210번지 일원	81,162	-	81,162	경고제2006-11호 (06.01.05.)	
기정	5	고방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월성리 695-1번지 일원	25,255	-	25,255	경고제2006-421호 (06.11.13.)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사문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사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호촌리 641-3번지 일원	139,389	-	139,389	경고제2006-11호 (06.01.05)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389	-	139,389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3	4,312	29,635	2	295	3,538	2	853	6,893	19	3,164	19,204
중로	2	212	3,219	1	50	1,096	-	-	-	1	162	2,123
소로	21	4,100	26,416	1	245	2,442	2	853	6,893	18	3,002	17,08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8	20~37	보조 간선	5,497 (50)	화원읍 성산리 (중로1-147)	월성리 235-3	일반 도로	-	경고제1974-187호 (74.06.15.)	군도 5호선	
기정	중로	3	1	13	집산 도로	162	호촌리 367-2	호촌리 495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45	호촌리 637-2	호촌리 682-2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2-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58	호촌리 359-6	호촌리 686-4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1-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95	호촌리 638-6	호촌리 563-36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8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58	6	국지 도로	238	호촌리 366-11	호촌리 721	일반 도로	호촌리 중로1-148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111	호촌리 361-1	호촌리 360-1	일반 도로	호촌리 중로3-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0	6	국지 도로	209	호촌리 684-5	호촌리 641-16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4	경고제2006-117호 (06.04.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177	호촌리 639-4	호촌리64 2-37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7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4	6	국지 도로	131	호촌리 641-18	호촌리64 1-3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5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5	6	국지 도로	155	호촌리 642-39	호촌리 641-4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5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6	6	국지 도로	50	호촌리 642-53	호촌리 642-51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2-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82	호촌리 642-63	호촌리 442-31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2-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185	호촌리 442-32	호촌리 442-23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69	6	국지 도로	173	호촌리 541-10	호촌리 532-5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26	호촌리 613-47	호촌리 613-47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2-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1	6	국지 도로	156	호촌리 642-14	호촌리 613-38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6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2	6	국지 도로	320	호촌리 600-6	호촌리 563-23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2-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3	6	국지 도로	229	호촌리 613-10	호촌리 608-3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7	경고제2006-117호 (06.04.10.)	
변경	소로	3	73	6	국지 도로	225	호촌리 613-10	호촌리 608-8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7	"	
기정	소로	3	74	6	국지 도로	168	호촌리 613-40	호촌리 613-8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5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5	6	국지 도로	39	호촌리 642-41	호촌리 642-40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8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6	6	국지 도로	495	호촌리 495	호촌리 1103-2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1-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7	6	국지 도로	62	호촌리 600-15	호촌리 600-15	일반 도로	호촌리 소로3-15	경고제2006-117호 (06.04.10.)	

※ ( )의 숫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선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73	소로3-73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종점명 변경 - L = 229m → 225m 감) 4m	○ 미개설구간의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종점명 변경

②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다산면 호촌리 613-32	400	-	400	경고제2006-117호 (06.04.10.)	

(나) 공간시설

①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다산면 호촌리642-40	1,176	-	1,176	경고제2006-117호 (06.04.10.)	

②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다산면 호촌리 641-7	558	-	558	경고제2006-117호 (06.04.10.)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다산면 호촌리 641-3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② 용도제한 분류표 (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 및 다가구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 용도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나. 광촌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광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광촌리 968번지 일원	101,196	-	101,196	경고제2006-11호 (06.01.05)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96	-	101,196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219	17,138	1	312	3,203	6	1,271	10,187	6	636	3,748
중로	1	10	138	-	-	-	-	-	-	1	10	138
소로	12	2,209	17,000	1	312	3,203	6	1,271	10,187	5	626	3,61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71 (10)	곽촌리 857-2 (중로1-4)	상곡리 26 (중로3-2)	일반 도로	-	경고제2018-58호 (18.01.18.)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312	곽촌리 134-6	곽촌리 203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17	곽촌리 940	곽촌리 1042-2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3-2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158	곽촌리 923-3	곽촌리 830-3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2-6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95	곽촌리 134-5	곽촌리 868-1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1-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66	곽촌리 832-1	곽촌리 830-1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73	곽촌리 861-2 (중로3-4)	곽촌리 134-3 (소로1-5)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62	곽촌리 830-3 (소로2-14)	곽촌리 121-2 (중로3-4)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8	6	국지 도로	171	곽촌리 1014-1	곽촌리 996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1-2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79	6	국지 도로	145	곽촌리 926-1	곽촌리 973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3-23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80	6	국지 도로	122	곽촌리 954	곽촌리 980	일반 도로	곽촌리 소로2-3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81	6	국지 도로	38	곽촌리 133-1	곽촌리 133-4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변경	소로	3	81	6	국지 도로	58	곽촌리 188	곽촌리 20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83	4	국지 도로	130	곽촌리 132-12	곽촌리 1042-2	일반 도로	-	경고제2006-117호 (06.04.10.)	

※ ( )의 숫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선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81	소로3-81	○노선연장 및 종점명 변경 - L = 38m → 58m 증) 20m	○개설현황을 반영한 노선연장 및 종점명 변경

②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주차장	다산면 곽촌리 134-2	456	-	456	경고제2006-117호 (06.04.10.)	

(나) 공간시설

① 녹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곽촌리1042-2	61	-	61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곽촌리 132-3	253	-	253	경고제2006-117호 (06.04.10.)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곽촌리 188	415	감) 33	382	경고제2006-117호 (06.04.1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녹지	○완충녹지 축소 - A = 415m <sup>2</sup> → 382m <sup>2</sup> 감) 33m <sup>2</sup>	○소로3-81호선 노선연장에 따른 완충녹지 축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다산면 곽촌리 968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② 용도제한 분류표 (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 및 다가구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다. 차남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차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월성리 210번지 일원	81,162	-	81,162	경고제2006-11호 (06.01.05)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81,162	-	81,162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1,893	27,673	2	1,181	22,649	3	252	2,119	2	460	2,905
중로	1	880	19,427	1	880	19,427	-	-	-	-	-	-
소로	6	1,013	8,246	1	301	3,222	3	252	2,119	2	460	2,90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8	20~37	보조 간선	5,497 (880)	화원읍 성산리 (중로1-147)	월성리 235-3	일반 도로	-	건고제1974-187호 (74.06.15.)	
기정	소로	1	7	10~13	집산 도로	500 (301)	월성리 157-2	월성리 233-6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3-25	경고제2006-117호 (06.04.10.)	
변경	소로	1	7	5~13	집산 도로	500 (301)	월성리 157-2	월성리 233-6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3-25	"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33	월성리 202-1	월성리 1302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3-24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13	좌학리 산29-2	좌학리 338	일반 도로	월성리 335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06	좌학리 338	좌학리 340-1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2-10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82	6	국지 도로	310	월성리 201	월성리 산77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3-25	경고제2006-117호 (06.04.10.)	
기정	소로	3	84	6	국지 도로	149	월성리 160	월성리 177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1-4	경고제2006-117호 (06.04.10.)	
변경	소로	3	84	6	국지 도로	150	월성리 160-2	월성리 177-2	일반 도로	월성리 소로1-4	"	

※ ( )의 숫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선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소로1-7	소로1-7	○ 일부구간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 B = 10~13m → 5~13m 갑) 0~5m	○ 미집행구간의 사유지 제척 및 개설현황을 반영한 일부구간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소로3-84	소로3-84	○ 노선연장 - L = 149m → 150m 증) 1m	○ 소로1-7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②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주차장	다산면 월성리 202-1	360	-	360	경고제2006-117호 (06.04.10.)	

(나) 공간시설

①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월성리 335	235	-	235	경고제2006-117호 (06.04.10.)	

②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공공공지	다산면 월성리 200-6	528	감) 528	-	경고제2006-117호 (06.04.1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A = 528m <sup>2</sup> → 0m <sup>2</sup> 감) 528m <sup>2</sup>	○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다산 중학교	중학교	다산면 월성리 210	9,397	-	9,397	대고제1987-54호 (87.05.23.)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다산면 월성리 210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② 용도제한 분류표 (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 및 다가구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라. 고방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고방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면 월성리 695-1번지 일원	25,255	-	25,255	경고제2006-421호 (06.11.13.)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25,255	-	25,255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573	3,568	-	-	-	1	154	1,230	5	419	2,338
소로	6	573	3,568	-	-	-	1	154	1,230	5	419	2,33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54	월성리 696-1	월성리 817	일반 도로	-	경고제2007-409호 (07.09.06.)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208	월성리 1305	월성리 1305	일반 도로	-	경고제2007-409호 (07.09.06.)	
기정	소로	3	89	6	국지 도로	320	월성리 696	월성리 735	일반 도로	-	경고제2007-409호 (07.09.06.)	
변경	소로	3	89	6	국지 도로	47	월성리 696-3	월성리 709-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99	6	국지 도로	39	월성리 1305	월성리 73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0	6	국지 도로	58	월성리 713-2	월성리 1305	일반 도로	-	경고제2007-409호 (07.09.06.)	
변경	소로	3	90	6	국지 도로	18	월성리 711-3	월성리 130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91	6	국지 도로	107	월성리 711-3	월성리 1305	일반 도로	-	경고제2007-409호 (07.09.06.)	
변경	소로	3	91	6	국지 도로	107	월성리 711-3	월성리 1305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89	소로3-89	○ 노선축소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L = 320m → 47m 감) 273m	○ 미집행구간의 사유지 제척 및 개설현황을 반영한 노선축소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3-99	○ 노선분리 - B = 6m - L = 39m	○ 미집행구간의 사유지 제척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3-90	소로3-90	○ 노선축소 - L = 58m → 18m 감) 40m	○ 미집행구간의 사유지 제척 및 개설현황을 반영한 노선축소
소로3-91	소로3-9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3-89, 90호선 정비에 따른 가각 일부 폐지

(나) 공간시설

①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공공공지	다산면 월성리 1305	667	-	667	경고제2007-409호 (07.09.06.)	
기정	9	공공공지	다산면 월성리 1305	679	-	679	경고제2007-409호 (07.09.06.)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다산면 월성리 695-1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 ② 용도제한 분류표 (변경없음)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 및 다가구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를 제외한 용도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전자메일(gong85@korea.kr)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도시과(☎054-950-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